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김영래 의원 외 6인

2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1.13. 시행)으로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성주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였고,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본 조례안의 정의 및 적용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~제3조)
나.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다.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라.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12조)
마.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공무원법」,「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 12. 17. ~ 12. 21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,
○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,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성주군의회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